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

제출년월일 : 2018. 0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관내 설립된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전통민속시설 대상 위치(안 제3조)

-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평창아라리 체험관,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시설사용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별첨)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에 97,908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5. 11. ~ 5.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입장제한 구체 행위 규정(안 제6조) 및 위탁운영 관련 조항(안 제10조) 등 개선권고(반영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전통민속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지역문화·생활문화의 향유공간을 지역주민·단체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민속"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생활문화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활동
2.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놀이, 음악, 춤, 농악, 소리, 의식,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민속 분야 지역주민·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과 그 향유 공간의 다양한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전통민속관(이하 "민속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각각의 민속관에는 전통민속과 관련된 제1호의 시설 중 1개 이상을 두며, 2호 이하의 시설을 둔다

1. 공연장, 체험관, 전시관, 전수관
2. 제1호의 시설에 따른 부속 시설

3. 주차장 등 부대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민속관은 전통민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존·육성 및 전수 교육

2. 연구 및 조사

3. 선양, 홍보, 체험제공 및 공연, 시설물 관리

4.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민속관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제5조(개관 및 관람) ① 민속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제6조의 입장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입장·관람할 수 있다.

② 민속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민속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④ 군수는 민속관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는 해당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속관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이용·관람 질서의 효과적 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전시·관람, 사용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해가 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등) ① 민속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③ 민속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현금 외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반환의 경우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등의 행사일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행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해당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호에 따른다. 다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 군수는 민속관의 관리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수익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수익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전대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민속관을 직접 운영하되, 그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읍·면에 해당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민속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립목적과 동일한 군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그 소재지별로 또는 통합하여 위탁운영(이 조례에서 “위탁운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민속 보존단체 또는 개인
2. 군 소재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전통민속 보존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④ 민속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민속관의 관리운영,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3에서 “문화

예술촌조례”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관리운영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3.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탁자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해지, 위탁운영경비 보조, 위탁업무 지도·감독 등 위탁운영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회계처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민속관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별표 1]

전통민속관의 위치

(제3조제2항 관련)

일련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1	평창둔전평농악전수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35-15외 3필지	
2	평창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25번지	
3	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4	평창아라리체험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608번지	

[별표 2]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속시설	사 용 료 (평 일)		사 용 료 (토·일요일 및 공휴일)	
공연장/ 체험관	공연장/ 연습실/ 체험실	1일	80,000	1일	100,000
		오전(09:00~13:00)	40,000	오전(09:00~13:00)	50,000
		오후(14:00~18:00)	40,000	오후(14:00~18:00)	50,000
		야간(19:00~23:00)	50,000	야간(19:00~23:00)	60,000
공연장/ 체험관/ 그 밖의 시설	냉난방	시간당	10,000	시간당	10,000

※ 1일 이용시간은 생활시설 이용 기준으로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임
(기준시간 미달일 경우에도 이용료 전액 납부)

[별표 3]

전통민속관 관리 운영 준용사항

(제11조제1호 관련)

준용사항	세부 준용사항	준용조례 및 조항	비고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가. 허가조건	문화예술촌조례 제8조제3항	
	나. 허가 우선순위	문화예술촌조례 제8조제4항	
	다. 제한 및 허가취소 등	문화예술촌조례 제9조	
	라, 사용료의 반환	문화예술촌조례 제10조제2항	
	마. 사용료의 면제	문화예술촌조례제10조제3항	
	바, 설비의 설치	문화예술촌조례 제11조	
	사. 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예술촌조례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전통민속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 사 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통민속관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락처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 사 명)				
참석예상인원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사용을 (□ 신규, □ 변경) 허가합니다.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일 이후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전통민속관 사용허가(취소·변경)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단 체 명</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사용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 :)</td></tr>
<tr><td>사용시설</td><td colspan="4"></td></tr>
<tr><td>사용목적
(행사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변경내용</td><td>구 분</td><td colspan="2">당 초</td><td>변 경</td></tr>
<tr><td>사용일시</td><td colspan="2"></td><td></td></tr>
<tr><td>그 밖의 사항</td><td colspan="2"></td><td></td></tr>
<tr><td>비 고</td><td colspan="4"></td></tr>
</table>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 소(단체명)			
	연 락 처	☎:	H.P:	팩스:
사용목적 (행사명)				
예상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면제사유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민속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서류 :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4조(업무 및 조직) ① 민속관은 전통민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선양, 홍보, 체험제공 및 공연, 시설물 관리

② 민속관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지원내역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기준으로 하여 상향된 금액으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액 : 147,096천원
- 인건비 산출근거: 63,096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61,000원×260일×3개소=47,580,000원
  · 주휴수당 : 61,000원×52일×3개소=9,516,000원
  · 4대보험료 : 2,000,000원×3개소=6,000,000원
- 일반운영비 산출근거: 84,000천원
  · 사무관리비 : 8,000,000원×3개소=24,00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5,000,000원(민속관별 상이)
  · 시설장비 유지비 : 10,000,000원×2개소+5,000,000원×1개소=25,0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연락처	(033) 330 - 22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47,096	147,096	147,096	147,096	147,096	735,480
기간제근로자인건비		47,580	47,580	47,580	47,580	47,580	237,900
주휴수당		9,516	9,516	9,516	9,516	9,516	47,580
4대보험료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사무관리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공공요금 및 제세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시설장비유지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